

# 참여연대 보고서

2011. 09. 16 | 제2011-17호

## 2011년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2>

외교/통상/통일/국방 분야

2011 정기국회에 바란다	4
<b>1부 입법과제</b>	7
외교·통일·국방 정책 분야	8
1.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일명 국방개혁307) 재검토; <국방개혁법>, <군인조직법> 개정 반대	8
2. 미군기지 오염조사권한 확대, 정보공개, 환경정화 책임 부여; <한미SOFA> 개정	12
3. 위험적인 군가산점제 재도입 철회와 대체복무제 도입; <병역법> 등 개정	14
4. 반복활동 지원 목적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 반대; <북한인권법> 반대	16
5.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의 즉각적인 철수	18
6. 아랍에미리트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반대; UAE 해외파병부대 철수	20
통상 정책 분야	22
7. 통상협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통상절차법> 제정	22
<b>2부 정책과제</b>	23
외교·통일·국방 분야	24
1.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 국정조사 실시 및 관련예산 전액삭감	24
2. 천안함 사건 민군합동조사단(정부) 최종보고서에 대한 국회 검증	26
3.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등 남북 신뢰회복 조치 착수	28
4.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과 미군기지 환경오염실태 전면 재조사	30
5. 핵발전소 건설과 수명연장, 수출 중단, 핵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요구	32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34
6. 협정문 한글본 번역오류 정오표 및 미국과의 서한교환 공개 촉구	34

7. 한미FTA로 인해 제·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령 등 현황, 상충 여부 검증	35
8. 한미 FTA 미국 이행법안 검토 및 효력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36
9. 한미 FTA 협상 절차 불이행에 대한 책임 추궁	37
10. 투자자-국가 제소권 폐기	39
11. 서비스 시장의 개방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 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	41
12. 역진방지(ratchet) 조항 폐기	42
13.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안전성 확보	43
14. 중소기업 보호 장치 확보	45
15. 중소기업인 보호 장치 확보	47
16. 개성공단 제품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조항 도입	49
17.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자료 철저히 검증	51
18. 위키리크스에서 드러난 한미 FTA 협상과정에 대한 진실 규명	53
[부록1] 국회상임위제출자료: 제주해군기지의 해양전략상 논란과 문제점	55
[부록2] 한미FTA와 독소/불평등 조항	61

## 2011 정기국회에 바란다

---

참여연대는 지난 9월 5일, 사회경제 분야/정치·행정·사법 분야 입법·국감과제 발표에 이어 <2011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외교·통상·통일·국방 분야 7개 입법과제, 18개 정책과제>를 발표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외교/통일/국방 분야 >

현재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307 국방개혁안'을 성문화한 국방개혁법개정안과 군인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군의 문민통제를 더욱 후퇴시킬 법안으로 개정을 반대합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제출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방개혁 307에 전제되어 있는 위험한 군사전략적 발상과 군사계획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다시 미군주둔 기지(캠프 캐틀)가 고엽제나 유해폐기물 매립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기지인근 주민들은 물론 국민의 환경권,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한미SOFA 본문과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개정하여 기지반환 이후 발견되는 오염에 대한 책임을 한국이 부당하게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오염 실태조사와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 미국이 관련 기록과 조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국회를 통해 촉구하겠습니다.

국방부의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시도를 저지하고,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보다 북한 체제 전복 활동을 지원하는 조항을 담은 북한 인권 관련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합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파견한 아프간 지역재건팀(PRT)의 즉각적인 철수와 작년에 핵발전소 수주대가용으로 파병을 결정한 '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의 철수 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군사안보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강정마을 공동체와 천혜의 자연환경 파괴의 문제, 주민들의 의사확인 문제를 비롯한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 등이 드러난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해군이 부실한 타당성 조사와 자의적인 해석으로 해군기지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겠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최종보고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진위여부가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등 천안함 사건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정부) 최종보고서를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촉구합니다.

### < 한미 FTA 협정 관련 >

한미 FTA는 포괄적인 경제협정으로 한국사회의 사회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만한 중대한 협상입니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지 못해왔고, 밀실에서의 양보와 재협상을 통한 추가양보 등 내용적으로도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정책과 충돌하고 정부/국회의 정책주권을 제약할 독소조항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 균등 협상으로 피해를 입게 될 각계각층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 역시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2백여 개에 달하는 협정문 한글본 번역오류 정오표를 공개하도록 촉구하고, 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또 한미 FTA로 인해 제·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령 및 자치 법규 현황과 상충여부를 검토하고, 한미 양국 간의 FTA의 국내법적 효력이 불균형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표적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 제소제와 역진방지 조항을 폐기하고, 서비스시장 개방 방식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은 한미FTA 협정문 제17장 정부 조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포괄적 규제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은 한미 FTA의 투자자 보호 조항과 충돌하여 무력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해 역외가공조항을 도입하고, 2011년 8월 5일, 정부가 제출한 한미 FTA 경제 효과 재분석 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국회가 실질적인 영향과 효과를 파악해야 합니다.

최근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난 한국 통상협상책임자와 고위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상대국인 미국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또 이 정보가 FTA 협상 과정과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제 시민, 노동, 농

민, 전문가 등과 함께 한미 FTA 협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졸속, 날치기 비준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 활동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9/5(월) 발표한 사회경제, 정치·행정·사법 분야 과제와 오늘(9/16) 발표한 외교·통상·통일·국방 분야 입법·국감 과제를 종합해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11 정기국회 입법·국감과제' 자료집을 제작하고, 전체 국회의원에게 배포했습니다. 자료 발표에 이어 국정감사와 입법국회, 예산국회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중요 사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 과정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 1부

2011 정기국회

7개 입법과제

### 1.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일명 국방개혁307) 재검토; <국방개혁법>, <군인조직법> 개정 반대

#### 1) 골자

-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307 국방개혁안'을 성문화한 국방개혁법개정안과 군인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이들 법안은 육해공 3군의 합동성 강화와 지휘구조 개편을 표방하고 제안되었음.
- 이들 법안을 둘러싸고 주요 보직의 존폐나 역할변경을 둘러싼 육해공 3군의 감정 섞인 논쟁이 있었음. 그러나 무엇보다 이들 법안은 군의 문민통제와 관련된 중대한 결함과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정에 반대함.

#### 2) 배경 및 취지

- 국방개혁법 개정안과 군인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MB식 국방개혁은 일단락 될 것임.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군사안보전략과 정책들은 국회라는 대의체계를 거치지 않고 국방부와 청와대, 그리고 한미동맹기구들의 밀실 안에서 이미 결정되었고 그 일부는 집행되고 있음. 그 골자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이른바 '307 국방개혁안'의 핵심 골격은 △북한 비상사태 대비와 현존하는 북의 비대칭 위협 대비, △능동적 억지전략 혹은 충분성에 입각한 전략적 보복능력 확보,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대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첨단전력 확보와 적정병력 유지, △합동성/즉응성 강화 등으로 요약됨. 여기에 △한미 전략동맹에 따른 국제 안보수요에 대한 공동대응, △세계 7대 무기수출국 진입 등의 목표도 포함됨.
- **북한 비상사태 대비**를 명목으로 공격적 군사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첫째, 국제법상 남과 북은 유엔 가입국이므로 북한 내부의 비상사태를 이유로 한미가 북한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또한,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거론하며 북한을 사실상 점령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공공연히 훈련하는 것은 상대방인 북한과 그 동맹국인 중국 모두를 군사적으로 긴장하게 만들고 이들의 군사주의를 부추기는 부메랑효과를 유발함. 셋째, 한미연합군의 북한 주둔 후 북 주민 혹은 군부 일부가 저항을 시작한다면 한반도 전역이 제2의 이라크 같은 장기분쟁지역으로 돌변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실에서 한미연합군이 휴전선 이북으로 진출하는 계획은 실현되기 어렵고, 이 계획을 발전시키고 훈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치적 군사적 긴장 비용과 대가가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있음. 더욱이 10년 후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위상이 현재와 같지 않을 것임을

염두에 두면 한미주도의 북한진출 군사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 할 수 없음. 차라리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하겠음.

- **비대칭 위협 대비론**은 북한 비상사태 대비론보다는 현실적인 군사적 우선순위로 보이는 것이 사실임. 그렇다면,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는 대신, 전면전 대비 전력은 축소되어야 마땅함. 예컨대, 현재의 과도한 육군 병력, 장교/장성 수, 과도한 기갑장비, 그리고 압도적으로 우세한 해공군력에 대한 군축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그러나 국방개혁 방안 어디에도 비대한 지상군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대안은 보이지 않음.
- 이명박 정부는 도리어 군복무기한을 늘이고, 군병력 감축계획을 재조정하는 등 육군 중심의 대군주의를 고수하고 있음. 2011년 국방예산안에서 국방부는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 투자를 내세워 군이 이제까지 요구해왔던 모든 첨단군사전력 소요(탄도탄조기경보레이다, 차기유도무기, F-15K 2차, FA-50, 차세대전투기사업-보라매 사업, 이지스함 광개토-Ⅲ,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고고도UAV 등)를 아무런 삭감이나 조정 없이 모두 반영하였고, 또한 '현존전력의 전력발휘 완전성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육군중심의 전력투자, 기갑화(K-2전차, K-21보병전투차량, K1A1전차 도입 등) 추진을 지속함으로써 이미 과잉투자 된 전면전 대비 전력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을 요구하고 있음.
- '능동적 억제전략' 혹은 '전략적 보복능력' 확보 같은 새로운 군사계획에 적용되는 개념들은 사실상 북에 대해 절대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음. 아군 측은 완벽하게 방어하고 상대측에 대해서는 완벽한 공격능력, 나아가 북한 안정화를 위한 점령능력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임. 하지만 아무리 전력과 장비를 늘인다 하더라도 비대칭 위협 자체는 사라질 수 없음. 절대억지를 목표로 한 군사계획은 북의 군부를 좌절시키기보다 오히려 군사적 불안감을 고취시켜 또 다른 비대칭 전력, 즉 보다 비정규적이고 파괴적인 전력 개발에 몰두하게 하는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
- 즉응성과 합동성의 개선을 꾀하는 것은 군의 자연스러운 속성이지만, '선조치 후보고'같은 즉응성을 강조하다보면 군사력 사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 특히 문민적 통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합동성도 금과옥조는 아님. 합동성 개선은 3군이 서로 잘 협력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무기를 첨단화하고 전자화함으로써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작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불요불급한 군비투자는 없는지 따져봐야 함.
- 즉응성과 합동성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연평도 사건의 사례가 언급되고 있으나, 과연 사실에 부합한 것인지 엄밀히 따져봐야 함.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가장 큰 문제는 포사격 훈련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중이던 K-9자주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심지어 대포병 레이더도 작동하지 않았다는데 있음. 2차 포격을 당할 당시 이미 연평도 인근에는 F-15가 공중에 떠 있었음. 말하자면 해병대가 전투하는데 공군이 협조하지 않았거나 우리 군에 첨단장비가 부족해서 '합동성'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임. 다만, 확전을 자제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판단으로 보복공격을 하지 않았던 것뿐인데, 이는 현명한 판단이었음. 최근 민항기를 향해 소총을 난사하고도 20분 가까이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사

건이 발생한 것을 보면, '선조치 후보고'를 공언하는 것에 비해 이명박 대통령의 당시 선택이 신중한 것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 3) 상세내용

- 국회에 상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에 따라 국방개혁법 개정안과 군인조직법 개정안은 합동성을 강화하고 군 상부지휘구조를 효율화한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법률에 의해 역할이 분리되어온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군 3군 본부의 역할을 통합하여 '통합군'으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는 중복된 기구들을 통폐합함으로써 군 상부구조를 축소하고 과도한 장성수도 줄이려는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표1>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합동참모본부 임무 확대	·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작전지휘·감독	· 각군본부 및 각군의 작전부대 작전지휘·감독	안 제2조제2항 (합참 각군 본부 지휘·감독)
합동참모의장 권한 강화 (제한된 군정권 부여)	·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작전지휘·감독	· 각군본부 및 각군의 작전부대 작전지휘·감독	안 제9조제2항 (합참의장 각군 본부 지휘·감독)
		· 합동작전 수행에 필요한 인사·군수·교육·동원 등의 제한된 군정권 행사(대통령령 규정)	안 제9조제3항 (합참의장 군정권 일부 부여)
각군 참모총장 권한 강화 (군령권부여)	·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정에 관하여 해당 군지휘·감독	·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정에 관하여 해당 군 지휘·감독 · 합참의장의 명을 받아 해당 군부대 작전 지휘·감독	안 제10조제2항 (참모총장 군령권 부여)
합참차장 확대 및 직무대행 순서 변경	· 3인 이내의 차장을 두되 (실제 1인 운영), 서열순으로 직무 대행	· 3인 이내의 차장을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대행	안 제12조제1항 (합참차장 2인 보임 예정)
참모차장 확대 및 직무대행 순서 변경	참모차장 1인	· 2인의 차장을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대행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표2> 국방개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합동참모 의장 및 차장의 군별 균형	·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하되, 그중 1인은 육군 소속 군인으로 보함	·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함	안 제29조제2항

- 하지만 육군 중심으로 지휘구조 개편통합을 진행하고 있어 지휘계선상 주요 직위를 육군이 독식하는 것에 대해 공군과 해군이 반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군주의를 골간으로 하다 보니 장성정원 삭감도 미미한 수준임.
-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총 460명의 장성 중 60명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천되어도 사병 10000명당 장성수는 평균 7.6명에 이르게 됨. 장성수가 많기로 유명한 미군이 평균 5명인 것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우리 사병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별자리'를 모시게 되는 것임.
- 그런데, 이 두 법률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합동성 강화하는 이름으로 통합되는 각 군의 역할의 내용과 범위를 모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백지위임하고 있다는 점임.
- 이 두 법안은 국회를 통한 문민통제 장치를 더욱 후퇴시킬 것임. 따라서 정부제출 개정안은 폐기되어야함.
- 더불어 국방개혁 307에 전제되어 있는 위협한 군사전략적 발상과 군사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됨.

4)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5) 관련 법안

- 국군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11-05-25, 정부제출, 의안번호 1811909)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2011-05-25, 정부제출, 의안번호 1811914)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 미군기지 오염조사권한 확대, 정보공개, 환경정화 책임 부여; <한미SOFA> 개정

### 1) 골자

- 주한미군 기지와 반환된 기지의 오염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한미SOFA 상 한국 정부의 조사권한이 없고, 관련 정보들이 비공개되고 있으며, 미국 측의 정화책임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미군기지 오염사고 및 실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권한을 보장하고, 미국 측의 정보공유 및 공개, 사고 시 즉시보고, 기지정화 책임 및 검증, 재발방지 의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한미SOFA 본문과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개정해야 함.

### 2) 배경 및 취지

- 2005년 미군기지 반환협상 이후 미군기지 41개가 반환되는 과정에서 대다수 미군기지들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짐. 2007년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음. 그리고 최근 캠프 캐롤 등 미군주둔 기지가 고엽제나 유해폐기물 매립으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됨. 이로 인해 기지인근 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들의 환경권,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한미SOFA는 미군의 동의 없이 오염사고에 대한 정보공개나 한국 측의 직접조사를 행사할 수 없게 하고 있음. 이것이 미군기지의 오염사고들이 쉽게 은폐되는 이유임. 이번 고엽제 매립에 관한 한미공동조사단 활동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정화책임과 검증을 강제하지 못해 막대한 정화비용을 한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음.

### 3) 상세 내용

- 2007년 국회가 최초로 '주한미군기지 환경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졸속협상으로 오염된 미군기지를 반환받고 있는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SOFA 개정 전에 추가로 미군기지를 반환받아서는 안된다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음. 당시 정부는 정보 비공개의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SOFA개정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음. 2008년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관련해 한미SOFA 개선논의가 한미 간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음. 당시 한미 간 논의는 SOFA 개정이 아닌 일부 개선안 도출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나마 현 정부 출범이후 일체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 분명한 것은 SOFA 합동위원회의 일부 개선안 합의로는 SOFA 본문과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있는 문제점들을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임. 국회는 정부가 SOFA개정에 나서도록 촉구해야 함.

- 그 동안 한미SOFA 문제점에 대해 한국 정부는 소극적이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취해왔음. 애초 한국 정부는 반환미군기지 오염은 미 측에서 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미 측이 기지오염 치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오염된 기지들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기지정화 비용을 한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했음. 2001년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SOFA 제4조의 주한미군 측의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조항을 미군의 오염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고 판결했음에도 미 측은 이를 악용하고 있음. 현재까지 3천억 원이 넘는 국방부 예산이 정화비용에 소요되었으며,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그 수준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임. 또 미군기지 뿐만 아니라 기지 주변의 오염으로 주민들의 건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주민들 건강피해나 영향조사도 하지 않고 있음. SOFA에서 4조를 아예 삭제하고 미 측의 환경정화 의무와 그 기준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해야 함.
- 게다가 정부는 미 측과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미군기지 오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또한 SOFA 운영절차 부속서인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 7조의 '정보교환 및 조사정보 배포는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내세워 기지오염실태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한국 사법부는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는 국회 기준을 거치지 않은 한미 간 합의서로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정보공개로 협상에 불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부속서가 국내 정보공개법 위에 있을 수 없고, 피해 당사자인 국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속서 7조 한미 양측의 승인 획득 조항을 삭제해야 함.
- 그 동안 미군기지 내부에서 벌어지는 환경오염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대로 파악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전예방조치나 조사활동, 정화를 신속하게 할 수 없었음. NATO-SOFA 독일보충협정에서 주독미군이 독일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독일정부가 환경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기지를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바와 같이 한미SOFA를 개정해야 함. 또한 기지 반환 이후 발견되는 오염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한국이 지지 않도록 미군의 사후 검증 책임 조항을 명시해야 함.

4)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3. 위험적인 군가산점제 재도입 철회와 대체복무제 도입; <병역법> 등 개정

#### 1) 골자

- 국방부가 군복무에 대한 유인책으로 이미 위험판결을 받은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음. 이를 저지하고, 대신에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해야 함.

#### 2) 배경 및 취지

- 국방부가 이미 1999년 위험판결을 받은 바 있는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음. 국방부는 가산점제 범위와 혜택정원을 제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군가산점제는 본질적으로 위험적이고 실효성도 없음.
- 대다수 젊은이들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징집되고 있는 군복무제도 하에서 군복무자들에게 대한 지원은 필요함. 그러나 군가산점제는 실질적인 보상이라기보다는 행정편의적인 수단에 불과함. 오히려 복무기간 단축이나 급여인상 등 병역제도 자체 개선을 포함한 보상방안을 강구해야 함.
-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하기로 결정되었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백지화되었음. 면제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기간보다 장시간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이 이어지고 있음. 지금까지 병역거부자 1만 6천여 명이 수감되었고, 현재 약 800여명이 병역거부의 대가로 수감되어 있는 상황임. 한국은 G20 회원국 32개 국가 중 병역거부자를 구금하는 유일한 나라이자, 병역거부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전 세계 유일의 나라임.

#### 3) 상세 내용

- 국방부가 연내에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천명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국방부는 군가산점제 재도입이 군복무에 대한 국가적 보상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군가산점제는 명백히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험판결을 받은 바 있음. 위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방부는 가산점 비율을 특점의 2.5%로 낮추고, 가산점에 의한 합격자 상한선은 20%로 제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현재 판결의 근본취지를 왜곡하는 것임. 무엇보다 군가산점제는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 실질적인 보상방안이 될 수 없음. 군복무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공기업 입사나 공무원 시험을 치르지 않는 남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음.
- 군복무자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모든 사병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내용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보상이 되어야 함. 그런 점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과 사병 인권보호, 급여

인상, 교육지원과 같은 복지혜택의 확대 등 군복무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더 실질적이고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음. 전체병력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사병들의 급여가 전체 인건비의 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불요불급한 무기들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구매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방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군가산점제 도입만 추진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임. 따라서 국회는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법률안을 저지해야 함.

- 반면 국방부는 전임정부 당시 약속했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백지화했음.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을 대량 범법자로 양산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물론 국가인권위의 대체복무제 권고가 잇따랐기 때문임. 지난 17대 여야 국회의원들도 대체복무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고, 당시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강조하기도 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8년이 넘게 진행되어 온 대체복무제 도입 노력을 무산시켰음. 이번에는 국민 68%가 대체복무제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 시기상조라고 주장함.
- 그 동안 유엔 인권이사회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하여 수차례에 걸쳐 병역거부권 인정을 권고했으며, 일반논평과 결의안을 통해 병역거부권을 명시하고 있음. 2006년부터 한국정부의 자유권 규약 위반사항을 적시하고,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음. 한국은 유엔회원국이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임. 나아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자유권 규약 가입국이기도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8월 헌법재판소조차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게 한 병역법 등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국제사회 인권기준이나 인식과의 상당한 괴리를 보여줌.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이 정당하지만, 최소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정당화하고 있는 이번 현재 판결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이 위헌조치가 아닐뿐더러 헌법과 국제인권 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치루지 않기 위해 국회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함.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되어 있는 2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대표발의, 이정희의원 대표발의)와 1건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져야 함.

#### 4)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4. 반복활동 지원 목적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 제정 반대;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 1) 골자

-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보다 북한 체제 전복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북한 인권 관련 법 제정에 반대함.

##### 2) 배경 및 취지

- 북한 주민들이 처해있는 심각한 인권실상에 대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가 매우 높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시민,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식량권과 의료권, 교육권 등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체제 내적인 노력이 일차적으로 요구되며, 한국과 국제사회의 중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음.
-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이후 한국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기보다 북한에 대한 대외적 압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음.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북한인권법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규제하고, 북한의 폐쇄성과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만한 조항을 담고 있음. 특히 북한 체제 전복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 단체들의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우려가 있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함.

##### 3) 상세 내용

- 1990년대 중반의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탈북 행렬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 등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와 한국 사회는 이를 깊이 우려하고, 북한 측의 개선 노력을 촉구해왔음.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시도로서 지난 16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해 한나라당 주도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음.
-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조건을 강조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대북 배라 살포 등 일부 반북단체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통일부에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집행계획 수립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 정부 들어서 남북대화나 대북 교섭 활동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사실상 반북 활동지원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음.
- 북한인권 관련 법 제정은 실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해

야 할 문제임. 북한 체제를 비난하거나 붕괴를 통해 북한 인권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북한 인권을 우려한다면서 당장 시급한 식량 지원 등 생존권 개선 노력조치가로막는 것은 모순임. 북한 체제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을 키우고, 반북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인권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음.

4) 소관상임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5.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의 즉각적인 철수

### 1) 골자

- 한미동맹 차원에서 지난 해 정부는 아프간 지역재건팀(PRT)을 파견했으나, 불안한 아프간 정세 속에서 한국 PRT는 지속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고, 실질적인 재건지원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2012년 파견시한까지 주둔할 이유가 없으므로 즉각 PRT를 철수시켜야 함.

### 2) 배경 및 취지

- 2007년 아프간에서 벌어진 한국 민간인 살해와 피랍사건 이후 아프간 파견부대가 철수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테러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09년 지역재건팀을 다시 파견함. 지역재건팀 활동은 미국의 아프간 점령정책의 일환으로, 군부대가 공적 개발원조(ODA) 활동을 하는 군사원조의 성격을 띠고 있음. 또한 지난해 아프간 PRT 경호를 명분으로 한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이 가결되어 300여명의 오쉬노 부대를 파병했음.
- 미국을 비롯한 다른 파병국가들이 철군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아프간 재파병을 결정하여 파병부대나 재외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에 처하게 하였음. 더욱이 여전히 불안한 아프간 정세는 유의미한 지역재건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실정임. 아프간 정부의 부패나 인프라의 부재 문제 이외에도, 지역재건팀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안보군(ISAF)의 지휘 하에 있어 사실상 점령군으로 인식되고 있고, 부패하고 친미적인 중앙, 지방정부와 협력관계에 있어 지역재건팀은 끊임없이 저항세력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음. 반정부 세력들의 공격이 오사마 빈 라덴의 살해이후 더욱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아프간 파병 국가들은 철군계획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음.
- 재건지원이라는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희생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프간 PRT를 더 이상 주둔시킬 이유가 없음.

### 3) 상세 내용

- 아프가니스탄권리모니터(Afghanistan Rights monitor, ARM)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아프간에서는 적어도 5,691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무장갈등사건도 일주일에 100건이 넘게 일어남. 수많은 병력과 막대한 전쟁비용을 투여한 아프간 대테러전쟁은 엄청난 민간인들의 희생과 반정부 무장세력의 양산을 초래하고 전쟁과 외국군에 대한 염증, 불신을 키우고 있음. 더욱이 올해 미국의 특수부대가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 처리한 것에 대한 공분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동맹국으로 아프간에 줄곧 군대를 파견해 온 한국 역시 공격대상이 되고 있음.
- 아프간 정세가 대체적으로 불안하지만, 한국군 주둔 초기 아프간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꼽히던 파르완 주도 급격히 위협해지고 있음. 올해 초 파르완 주 경찰청장이 폭탄테러로 숨졌고, 지난 8월 14일 파르완 주지사 관저에서 테러와 총격전이 발생해 22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친 일도 벌어졌음. 2014년 미군 철수 일정에 따라 곧 파르완 주 치안권이 연합군에서 아프간 군정으로 이양될 예정이라 치안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됨.

- 한국군 지역재건팀(PRT)도 올해만 외부로부터 13차례나 공격을 받았음. 불안한 아프간 상황으로 한국 PRT는 의료, 교육지원과 같은 활동은 물론 주둔지 공사도 마무리 못하고 있음. 오히려 반정부 세력의 잦은 공격으로 PRT 부대원과 주둔지의 안전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이렇듯 한국군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공격의 주체도 밝히지 못하고 있음. 공격받은 사실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도 함.
- 테러와의 전쟁 10년과 한국군 파병에 대해 냉정히 평가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음. 그 시작은 하루 빨리 아프간 PRT를 철수시키는 일임. 국회는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아프간 PRT 파견을 지속하기보다는 안규백 의원 등 민주당에서 발의한대로 철군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대신 아프간 주민들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4)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6.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반대; UAE 해외파병부대 철수

### 1) 골자

- 지난 해 '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 파병동의안이 법적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날치기로 처리되었음. 비분쟁 지역에 상업적인 이유로 특전부대를 파병한 것은 명백히 위헌임으로 즉각 철수해야 함.

### 2) 배경 및 취지

- 지난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와 핵발전소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 특전사 파병을 약속함. 이에 지난 해 한나라당은 파병의 위헌성과 정당성을 논의하는 절차도 생략한 채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킴.
- 최근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떠들썩하게 발표했던 '사상최대의 건설 공사 수주'의 이면에는 과장과 허위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수주전에 뛰어들어 탁월한 외교력으로 수주를 따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이미 발표 한 달 전에 수주가 확정되었다든가, 수주 규모가 400억 달러가 아닌 186억 달러 규모라는 사실이 밝혀짐. 또한 핵발전소를 수주하기 위해 핵발전소 건설비용 중 절반에 가까운 90~110억달러를 28년간 장기 대출해주어야 하며, 대출과정에서 한국과 UAE의 신용등급 차이로 역마진(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도 한국에서 떠맡게 되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었음이 드러남. 나아가 한국이 UAE에 군사관련 훈련을 제공하는 내용의 한-UAE 간 군사협력 관련 약정도 비밀리에 추진했음이 드러남. 현재 한-UAE 간 군사협정은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UAE 핵발전소 수주를 현 정부의 치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 과장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라는 군대의 존재 목적과는 무관하게 상업적 이유로 한국군을 파병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음. 어떤 나라든 원전수출에 끼워 넣기 식으로 군대를 보낸 나라는 없음. UAE 특전사 파병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음.

### 3) 상세 내용

- UAE 핵발전소를 수주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2010년 한국군 특전사 부대 파병을 추진함. 파병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 국방위원회 심사는 물론 안전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됨. 군은 파병계획 발표 전에 UAE 파병에 대한 아무런 법적 검토를 하지 않았음. UAE 파병부대는 특수전팀, 고공팀, 대테러팀, 지원부대 등 130명으로 편성됐고 한국 최정예 대테러 특수부대인 707 특임대원들도 포함돼 있음. 정부와 한나라당

은 이후 파병논란을 피하기 위해 파병 기간도 2년으로 정함.

- 정부는 비분쟁 지역 파병에 대한 법적검토 대신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평화유지와 재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지침(2008. 8. 18)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UAE 파병부대는 국제평화유지나 재건활동을 임무로 하지 않고 있음. 파병에 따른 실익이라고 주장하는 방산 수출과 원전 고용효과도 자의적인 기대치에 불과함.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10년 동안 중동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가장 군사비가 급증한 국가이며, 미국·영국·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테러 발생 위험 국가’로 분류돼 있다는 점에서 군사협력 대상으로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인 협력관계에 나서고 있음.
- 국회 비준도 받지 않은 한-UAE 군사협력약정을 UAE 파병의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임. UAE 수주 이후 맺은 군사협력약정의 경우, 2급 비밀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1996년 파키스탄과 맺은 비밀 약정 이후 14년만의 일임.
- 따라서 UAE 핵발전소 수출을 위한 한국군 파병은 상업적 목적의 파병은 물론 무분별한 파병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음. 국회는 UAE 파병부대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해야 함.

#### 4)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통상 정책 분야

### 7. 통상협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통상절차법> 제정

#### 1) 골자

-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60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통상협상 전반에 걸친 국회와 국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한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야 함
-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 전에 국회의 입법권 확보와 FTA 발효 이후의 사후 통제를 위해 통상절차법(혹은 조약절차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해야 함.

#### 2) 배경 및 취지

- 통상교섭본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무역위원회'는 FTA 협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이 결정에 국가가 구속되도록 하고 있음. 관장 범위가 '모든 사안'으로 무제한적이며, 협정에 대한 해석 권한까지 가지고 있으며 협정에서 규정한 일부 조항은 '무역위원회'가 마음대로 개정까지 할 수 있음.
- 이러한 정부의 통상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통상협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통상절차법이나 조약절차법과 같은 법률을 마련해야함.

#### 3) 상세내용

- 현행 헌법상 FTA 협상 내용에 동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임. 그러나 지난한 ·EU FTA에서 통상교섭본부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고, 비준동의 시한을 정하고, 국회처리를 요구했음. 이는 명백한 월권이며, 위헌임.
- 정부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직후 대통령훈령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절차규정'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협상 과정에 대한 국회 및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통상 당국의 협상 절차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제 국회는 행정부와 국회가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고,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부에 통상협상을 위임하는 대신,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취약산업에 대한 선대책 의무화 등을 명시한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야 함.

#### 4)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팀 02-725-7105

# 2부

2011 정기국회

18개 정책과제

### 1.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 국정조사 실시 및 관련예산 전액삭감

#### 1) 골자

- 현재 정부와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고 있지만, 제주해군기지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군사안보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강정마을 공동체와 천혜의 자연환경 파괴의 문제, 주민들의 의사확인 문제를 비롯한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 등이 드러난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 국회가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부대조건으로 예산을 책정했으나, 해군이 부실한 타당성 조사와 자의적인 해석으로 해군기지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함.
- 무엇보다 최근 해군기지건설 사업에 관한 협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고, 제주의 기원과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가 일부 발굴되어 정밀 조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으로 기지공사를 강행하고 있음. 관련하여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2) 배경 및 취지

- 2007년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강정 중덕해안을 해군기지 건설예정지로 결정한 이후 정부, 해군, 제주도는 편법적이고 일방적인 각종 조치를 통해 기지건설을 추진해 왔음. 절대보존지역 지정도 날치기로 해제하고, 각종 희귀종, 멸종위기종이 발견되고 있는데도 환경영향평가도 요식적으로 진행했음. 반면 해군기지건설을 압도적으로 반대한다는 마을 주민투표의 결과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해양안보구상에 이용되거나 미중 해양패권경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음. 대신 해군기지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지난 4년 이상 기지건설에 저항해 온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각종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고, 대규모의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진압과 인신구속에 나서고 있음. 그리고 해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취지를 무시하고, 사실상 균형건설만을 추진해왔음.
- 정부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앞세워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무시하고,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며, 정당한 문제제기도 폭력적으로 억누르면서 주민들은 물론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3) 상세 내용

- 말라카 해협이 주된 갈등이 테러나 해적활동이 아닌 불법어로 문제라는 점에서, 해군을 파견하여 해양수송로 보호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동맹국의 기지를 활용하는 미국의 해양 전략이나 미중 해양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거나 공유되지 않은 채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어 온 것도 문제임. 해군기지 건설시 미항모의 기항 혹은 체류 가능성을 포함해 기지 건설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
-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입지선정 절차의 문제, 행정절차의 문제, 보전대책이 미흡한 환경훼손문제, 강정마을 공동체의 붕괴,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공권력의 남용과 횡포, 구속, 고소·고발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음. 또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난 8월 4일, 야5당 진상조사단이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야5당 진상조사단이 해법으로 제안한 바대로 기지공사를 중단하고, 국회 특위구성 혹은 국정 조사를 통해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더욱이 선사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제주도의 기원과 역사성을 보여주는 유구들이 일부 확인된 만큼, 이를 반드시 보존하고 확대·심층조사에 나서도록 촉구해야 하며, 문화재 발굴 시 공사를 중지하도록 규정한 '매장문화재 보호와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들을 따져 물어야 함.
- 최근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 여론이 확대되면서, 정부와 해군은 공권력과 사법권력을 동원하여 기지건설을 강행하고 있음. 대규모 육지경찰과 진압장비를 파견하여 공사강행에 항의하거나 저항하는 이들을 무더기로 연행하고 구속시켰음. 기지건설 반대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위축시키는 한편 해군기지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조건에 있도록 하기 위해 기지공사를 재개하고 있음. 이는 정치권, 종교계,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무시한 처사임.
- 정부와 해군의 일방적인 사업추진과 경찰과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해 반드시 문제제기 해야 함. 아울러 해군이 국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을 무시하고, 국회와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해군기지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는 제주해군기지건설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함.

### 4)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 천안함 사건 민군합동조사단(정부) 최종보고서에 대한 국회 검증

### 1) 골자

-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최종보고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진위공방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등 우리사회 내부는 물론,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음.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검증요구가 제기되는 만큼 국회는 철저하게 검증해야 함.

### 2) 배경 및 취지

- 천안함 사건은 유족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음. 하지만 안타깝게도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음.
-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정부는 잦은 말 바꾸기와 과도한 정보통제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고, 선거 등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음.
- 정부가 밝힌 조사결과는 과학자들의 반론에 부딪히거나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의문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음. 더욱이 원인제공자로 지목된 북한 외에 주변국들도 여전히 의문을 표시하고 있음.
- 특히 남북군사회담 실무회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비공개 접촉 등에서 연평도 피격사건과 더불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시인과 사과 문제가 쟁점이 되기도 했음.
- 아래 제안 내용은 지난 2011년 3월 23일 천안함 사건 1주기를 맞아 각계인사 97명이 연명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사항임.

### 3) 상세내용

-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시인과 사과를 남북(군사)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통일로 나아가야 하는 민족의 비원과 아울러 대규모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항상적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평화의 유지와 확대를 위한 노력은 어떤 이유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될 과제임. 무엇보다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남북 간 그리고 주변국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남북대화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할 수 있고, 심지어 남한 측이 대화를 기피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하여 연평도 피격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남북 간 군사긴장 완화 방안을 두루 논의하는 것은 양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남북대화의 기회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전제로 하는 입장 때문에 실무단계에서 좌초되어서는 안 될 것임.

-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대해 납득할만한 추가조사와 검증이 필요함.**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사례를 염두에 둘 때, 천안함 진상조사 작업은 지나치게 단기간 이루어졌고 또한 부실하게 이루어졌음. 특히 과학자들이 제기하는 반론과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신뢰할만한 검증이 필요함. 이를 둘러싼 남북 간, 주변국간 논란과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음.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검증에 나서야 함. 더불어 정부 조사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국가 및 북한의 참여까지 허용하는 국제적인 검증작업도 이루어져야 함.
- **정부는 천안함 사건 관련 1차 자료와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이 사건 관련 정보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정부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왔음.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참여한 3개 중립국 대표들도 유엔에 회람된 문서를 통해 한미당국의 소극적인 정보공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정부는 미국 등과 체결한 정보비공개 양해각서를 개정하여 정보 통제를 완화해야 함. 시민들이 청구한 기초사실관계에 대한 정보 역시 즉각 공개해야 할 것임.
-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던 시민들과 사회단체에 대한 무리한 수사과 처벌은 중단되어야 하며, 이들이 마치 국론분열을 야기하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 공권력을 동원해 홍보하는 것 역시 중단되어야 함. 또한 천안함 관련하여 제기되는 합리적 의문점들을 탐사보도 했던 언론인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철회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는 근절되어야 함. 이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진실의 토대 위에서 국민의 합의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원리로 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정면도전임.

4)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3.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등 남북 신뢰회복 조치 착수

#### 1) 골자

- 남북관계의 단절이 남북 모두에게 군사적 긴장을 가중시키는 한편, 경협 진출 기업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음. 금강산 관광을 비롯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등 전향적인 남북관계 개선 조치에 나서야 함. 또한 흡수통일 기조를 폐기하고 남북 신뢰회복 조치에 착수해야 함.

#### 2) 배경 및 취지

- 2008년 박왕자씨 피격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단행한 5.24조치로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지원과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됨. 어렵게 이어오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연평도 교전 이후 전면 중단되면서 남북관계는 사실상 단절 상태에 이룸. 정부는 북한에게 도발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묻겠다며 남북 교류 사업을 전면 중단시켰으나, 북한은 북중, 북러 경협을 강화하는 등 다른 활로를 모색하고 있음. 반면 북한이 금강산관광 중단 관련 재산몰수를 압박하고, 개성공단 등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부도 사태가 이어지면서 남한의 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임.
- 최근 정부는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을 일부 허용하고, 종교계의 사회문화교류 차원의 방북을 승인하고 있음. 북한의 수해복구 물자 지원 의사도 북 측에 전달함.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5톤 이하의 식량지원, 수해지원, 이산가족 상봉 추진 의사 등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의 부분적인 전환이 시도되고 있음.
- 비핵개방3000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공약은 빛바랜 지 오래이며, 북한 붕괴 가능성에 기댄 압박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대결과 대립의 남북관계로 귀결되었음.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환이 모색되어야 하며, 우선 남북 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에 나설 필요가 있음.

#### 3) 상세 내용

- 남북교역의 감소치는 전년 대비 2008년 15.4%, 2009년 27.0%, 2010년 36.6%로, 남북교역이 현격히 감소되었음. 특히 5.24조치 이후 2010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액은 4억 7천만 달러에 불과함. 이는 1991년 이후 역대 최저치임. 5.24조치로 인한 남측의 피해액은 45억달러, 북측은 8억달러로 추정되고 있음. 정부가 북한에게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면서 남측 주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이를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태도임.
-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3년간 사회문화 분야의 회담은 단 1건에 불과함. 민간 차원의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사업도 2007년 19건에 비해 2008년 3건, 2009년 0건, 2010년 1건에 불과한 실정임. 최소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겠다는 것도 연평도 교전 이후 전면 중단되었음. 이러한 가운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국고에서 잠자고 있음.

- 최근 미미하지만 대북지원과 남북교류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5·24 대북조치 이후 처음으로 팔만대장경 판각 1000년 기념 고불법회 참여를 위한 조계종 인사들의 방북을 승인하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천주교가 신청한 대북 밀가루 지원을 위한 방북을 승인했으며, 우리민족서로돕기의 이동식 말라리아 초음파 진단기 2대의 대북 반출을 허용한 것이 그 사례들임.
- 그러나 대북지원과 남북교류사업에 있어 도그마식 잣대를 들이대는 행태는 여전함. 북한의 수해지원 요청에 대해 지원된 쌀이 북한군부로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해 쌀 대신 쌀가루를 보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인도적 지원은 말 그대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추진되어야 함. 또한 대북 쌀 지원이 비단 북한 주민들만 돕는 것이 아니라 남한 쌀값 안정에도 기여하는 등 상호보완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은 지난 10년간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완충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중소기업의 활로가 되기도 했음.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비롯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면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남북 간의 신뢰회복이 시작될 수 있음. 그 과정에서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북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도 구할 수 있음.
- 남북 간에 그 어떤 신뢰도 없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안정은 요원하며, 대북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려움. 국회는 남북 간의 신뢰회복 조치로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전면 재개를 정부에 촉구해야함. 또한 연초 통일부가 업무계획에서 밝혔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우선 접근과 이를 통한 북한의 근본적 변화라는 남한판 통일전선전략의 폐기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4) 소관상임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4.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과 미군기지 환경오염실태 전면 재조사

### 1) 골자

- 주한미군의 고엽제 및 유해폐기물 매립과 이로 인한 기지 안팎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함.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또한 고엽제의 한국 내 반입과 매립, 저장, 반출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은 물론 캠프 캐롤 이외 주한미군 기지 및 반환기지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함.
- 미 측이 보유하고 있는 고엽제 등 유해폐기물 매립과 기지오염에 관한 기록과 조사보고서, 증언내용을 한국 측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자체조사와 검증을 통해 국민들의 우려와 의혹을 해소해야 함.

### 2) 배경 및 취지

- 지난 5월 퇴역 주한미군인 스티브 하우스씨가 캠프 캐롤 내 고엽제 매립을 폭로한 이후 캠프 캐롤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지역, 강원 지역에서 고엽제를 보관, 살포했다는 증언들이 나왔음. 공식적으로 주한미군은 1968년 4월~1969년 7월에 DMZ 내에 고엽제가 살포되었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시기에도 DMZ 외 다른 지역에서 고엽제를 저장, 사용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음.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에는 고엽제뿐만 아니라 각종 유해폐기물이 저장, 누출되어 많은 미군기지의 토양,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는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음. 캠프 캐롤의 경우 기지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피해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
- 그러나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환경범죄나 기지오염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음. 이례적으로 꾸러진 한미공동조사단은 지금까지 캠프 캐롤 내 고엽제 드럼통 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두어 조사하고 있고, 8월 5일, 캠프 캐롤 내 고엽제가 매립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음.
- 결과적으로 조사단과 정부는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과 기지오염에 관한 국민들의 우려나 주민들의 불안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음. 따라서 고엽제 매립 의혹을 둘러싼 진실 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함.

### 3) 상세 내용

- 지난 5월 퇴역 주한미군의 증언으로 1978년 주한미군 측이 캠프 캐롤 내 고엽제가 다량 매립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이후 캠프 캐롤이 수십 년 간 수많은 화학물질 매립으로 오염되었다는 것이 1992년, 2004년, 2009-2010년 등 미군의 세 차례 조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됨. 미 측의 보고서나 민간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는 기지 내 지하수가 TCE, PCE, 비소, 수은, 농약과 같은 맹독성 물질들로 오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지 밖 주민들이 마시는 지하수에서도 TCE, PCE, 농약이 발견되었으며, 일부 가정집 지하수에서는 발암물질이 음용수

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이 확인됨. 그러나 미군 측은 이러한 토양,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나 지자체는 물론 한국 정부에 그 어떤 사실관계 확인이나 정보를 제공한 바 없음.

- 현재 미군 측은 1978년 매립작업이 진행되던 당시 캠프 캐롤 기지의 화학물질 입출기록이나 스티븐 하우스씨의 작업 기록은 물론, 고엽제로 인해 진료를 받은 의무기록까지도 없으며 내놓지 않고 있음.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캠프 캐롤 내 유해폐기물 드럼통을 매립했다고 증언한 구자영씨나 미2사단 부대 내 저장 중이던 고엽제를 모두 폐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한 래리 앤더슨의 증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 한미공동조사단은 최초 고엽제 매립을 증언한 스티븐 하우스씨가 직접 방문하여 매립지역을 지목했는데도 그 지역을 조사하지 않은 채 지난 8월 5일 캠프 캐롤 미군기지에 고엽제가 매립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함. 그러나 한미공동조사단의 중간발표는 기지 내 지하수와 기지 외부 토양의 다이옥신 성분 조사결과만을 다루고, 고엽제 매립 의심지역에 대한 토양시추 결과나, 주민들이 마시고 있었던 지하수에 대한 조사결과를 포함하지 않았음. 기지 밖 주민들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토양보다는 지하수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하수 조사 결과 발표는 나중에 미루었음. 뿐만 아니라 현재 한미공동조사단은 TCE, PCE는 고엽제와 상관없는 물질이므로, 고엽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발암물질 지하수는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주민들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계획도 없음.
- 미군이 주도하는 한미공동조사단은 미 측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기대하기도 어려움. 또 한국 정부도 적극적인 조사나 공개된 기록에 대한 검증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국회 차원의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과 환경오염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함. 기지 주변의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건강피해까지 포괄하는 전면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한국 내 고엽제의 유입과 이동, 저장, 사용, 폐기의 전 과정을 규명해야 함.

#### 4)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5. 핵발전소 건설과 수명연장, 수출 중단, 핵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요구

### 1) 골자

-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핵발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핵 위기에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수명연장 등에 적극 나서고 있음. 또한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진행 중임.
- 이러한 정부의 핵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핵발전소 수출과 핵테러 방지, 핵발전소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의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토와 개입이 필요함.

### 2) 배경 및 취지

- 지난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 후쿠시마 핵사태 등은 핵 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웠음. 이에 일본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이 핵발전 전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는 등 핵정책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은 예외적으로 핵정책 전환이 전혀 모색되지 않는 무풍지대임. 이명박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를 잠시 피해야할 소나기로 사고할 뿐 핵정책을 바꿀 계기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도리어 정부는 이웃 국가의 핵사태를 목도하고도 핵에너지 의존율을 높이고,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며, 수명이 다 된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음. 나아가 일본의 재난을 기회로 삼아 대규모 핵발전소 수출에 나서고 있음.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고속증식로, 중소형 원자로 등 대규모 핵단지(원자력 클러스트)를 건설할 계획임. 또한 2014년에 만료가 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통해 한국 정부는 재처리 기술 보유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그러나 핵무기이든 핵발전이든 인간에게 재앙과도 같은 위험한 것임을 후쿠시마 사태와 이전의 드리마일, 체르노빌 핵사고는 증명해주고 있음.

### 3) 상세 내용

-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의 핵심은 핵발전소 수출에 있음. 사실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핵발전소 수출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UAE 핵발전소 수출을 대단한 치적인양 정규방송을 중단하면서까지 대대적으로 홍보했음. 그러나 정부가 자화자찬했던 UAE 핵발전소 수출 건의 경우 수출규모를 부풀리고,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자금 대출과 역마진 의혹도 제기되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정부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 핵발전소 80기를 수출하여 세계 3위의 핵발전 강국으로 급부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지난 3월 11일, 일본에서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났고 뒤이어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참사가 일어나면서 핵사고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던 3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UAE 핵발전소 기공식에 참여하기 위해 출국했음. 이후에도 정부와 원자력계는 후쿠시마 핵사고를 핵발전소 수출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음. 현재 정부는 대단히 위험한 핵물질과 기술을 수출하는 일이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과 국력을 과시하는 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음. 지금까지 한국의 여러 핵발전소에서 각종 방사능, 냉각재 누출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수 십 차례 보고되었지만, 실무적인 작은 착오인 것처럼 사고를 은폐하고 왜곡하고 있음.
- 정부는 지난 7월 수명연장 논란이 있던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내년 3월 가동 목표였던 신월성 1호기의 가동을 앞당겨 올해 12월부터 가동하겠다고 발표했음. 지질이 불량하고 많은 지하수가 유입되어 안전성 논란이 있던 경주 핵폐기장도 조만간 건설공사장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신규핵발전소 부지 선정계획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거기다 경상북도에 원자력 클러스트라든 대규모 핵단지를 건설하여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고속증식로, 중소형 원자로 등을 갖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2014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은 이미 3차례나 진행된 상태임. 정부는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가 포화 상태에 이른다고 하며 핵연료 재처리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파이로프로세싱이라고 알려진 재처리 기술은 공인된 기술이 아니며,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음. 탈핵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지금,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 따라서 국회는 내년에 서울에서 열릴 2012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문제에 관한 한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로,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핵안보 문제에 집중할 예정임.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첫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테러 위협이 세계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며, 핵물질이 테러단체에 넘어가지 않도록 공동의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 강조되었음. 그 동안 안보의 수단이었던 핵이 안전하게 지켜야 할 대상이 된 것이고, 핵군축, 핵비확산, 핵의 평화적 이용에 집중되었던 국제사회의 의제가 핵안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동시에 핵안보정상회의가 문제의 근원인 핵무기나 핵발전소의 축소나 폐기를 논의하지 않고, 핵발전소와 핵물질의 안전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의미함. 게다가 우리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를 한국의 “원자력 기술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원자력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고 있음.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핵 없는 세상과는 거리가 먼 논의를 다시 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만큼, 국회 차원의 대응이 요구됨.

4) 소관상임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 6. 협정문 한글본 번역오류 정오표 및 미국과의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공개 촉구

#### 1) 골자

- 정부에 한글본 번역 오류 정정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와 정오표(正誤表), 미측과 합의한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일체를 공개하도록 촉구하고, 그 내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함.

#### 2) 배경 및 취지

- 정부는 협정문 한글본에서 번역오류가 발견되어 2008년 10월 8일 국회에 제출했던 비준동의안을 2011년 5월 4일 스스로 철회하고, 오류를 정정하여 6월 3일 새 비준안을 제출했음.
- 외교통상부는 6월 3일, 협정문 한글본에서 잘못된 번역 166건, 잘못된 맞춤법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일관성 결여 25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 총 296건의 오류를 정정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정정했는지 전체 정오표를 공개하지 않아 협정 내용의 구체적 검증을 방해하고 있음.
- 외교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가 번역 오류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정한 한글본을 웹사이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정오표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민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정부는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정오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외통위 상정 당일에 제출한 바 있음.

#### 3) 상세내용

- 새로 제출한 비준동의안의 내용을 국회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반드시 정오표를 확인해야 하고, 정부가 정오표를 공개하지 않으면 국회는 수정 전후의 한글본 전체를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불필요한 수고를 해야 함. 외교부는 정오표 일체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이를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정부는 6월 2일, 미측과 한글본 오류의 정정을 합의하는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을 했다고 밝혔음. 이 서한 역시 국회에 제출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4) 소관상임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팀 02-725-7105

## 7. 한미FTA로 인해 제·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령 및 자치법규의 현황, 상충 여부 검증

### 1) 골자

- 국회는 정부가 한미 FTA로 인해 제·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령 및 자치 법규 현황과 2007년 협정문 서명 이후 제·개정된 국내 법령 및 자치 법규와 한미 FTA와의 상충 여부를 공개하도록 촉구해야 함. 아울러 그 내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함.

### 2) 배경 및 취지

-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해 제·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건설기계관리법 등과 같이 2007년 협정문 서명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국내법령과 한미 FTA와의 상충여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음.
- 미국의 경우, 이행법안과 별개로 이행법안이 미국 현행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협정이행을 위한 행정부의 조치가 미국 현행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미 통상법 3803(a)(2)조).

### 3) 상세내용

- 정부는 비준동의안에 참고사항으로 “협정의 이행을 위한 법률안 국회 기제출 또는 제출 예정”이라고만 표기하고 전체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음. 또한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음. 이를 공개해야 함.
- 정부는 한미 FTA와 상충하는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의 현황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조례와 같이 협정문 서명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국내 법령과 한미 FTA와의 상충 여부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함.

- 4) 소관상임위 : 국토해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팀 02-725-7105

## 8. 한미 FTA 미국 이행법안 검토 및 효력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 1) 골자

- 미국이 한미 FTA에 따른 미국의 의무를 이행법안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한미 양국 간의 FTA의 국내법적 효력이 불균형한 문제를 해소해야 함.

### 2) 배경 및 취지

- 미국 상·하원에서 비공식 심사를 마친 한미 FTA 이행법안에는 "미국법률과 한미FTA 협정이 저축·충돌하는 경우 미국 법이 우선하며, 협정의 어느 규정이나 적용이 미국 법과 상충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 반면, 우리는 한미 FTA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거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 되어 한미 FTA 적용에 효력 불균형 문제가 발생함.

### 3) 상세내용

- 미 상원 재무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한미 FTA 이행법안 102조에 따르면, 한미 FTA는 미국 내에서 연방법과 주법의 하위 법령이며, 자기 집행력이 없음.
- 미국 내에서 한미 FTA의 효력은 이행법안에 의해서만 발생하므로 우리는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미국의 이행법안이 한미 FTA에 따른 미국의 의무를 빠짐없이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함.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 상하 양원의 이행법안을 국회에 보고해야 함.
- 아울러 유보조건부 동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한미 FTA의 국내법적 효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4) 소관상임위 : 국토해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부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팀 02-725-7105

## 9. 한미 FTA 협상 절차 불이행에 대한 책임 추궁

### 1) 골자

- 한미 FTA 원협상 및 재협상이 대통령 훈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와 관련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협정문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통상교섭본부장 등에게 정부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함. 아울러 지금까지도 협상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해야 함.

### 2) 배경 및 취지

-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시행 2004. 6. 8.) [대통령훈령 제121호, 2004. 6. 8. 제정] 제21조(협상진행상황 보고 및 설명)에 따르면, 통상교섭본부장은 “관련 이해당사자 및 국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협상의 중요 진행 상황을 수시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한미 FTA는 대통령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었음.

### 3) 상세내용

- 통상교섭본부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과 미리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면, 한미 FTA 협정문 제17장(정부조달- 현행 중앙정부만 해당) 유보목록의 급식 프로그램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조달대상으로 본다는 조항을 기재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정책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었을 것임.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통령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한 채 협상을 진행하여 현행 학교급식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야 함.
-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및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하여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한 바가 없음. (동반성장위원회는 작년 재협상 타결 이전에 출범한 기구로, 외형상으로는 민간기구이지만 2010년 9월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으로 설립된 사실상 정부기구임. 2011년에는 정부 예산 14억 원이 지원된 바 있음). 정부는 작년 재협상 타결 이전에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상생법 관련 이해당사자인 중소기업·상생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고,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협상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없음.
-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통령 훈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협상에 반영했다면, 지금과 같은 내용의 협정문이 타결되는 일은 없었을 것임. 정부에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지금까지도 협상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해야 함.

4) 소관상임위 : 국토해양위원회, 농림수산물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팀 02-725-7105

## 10. 투자자-국가 제소권 폐기

### 1) 골자

- 투자자-국가 제소제(이하 'ISD')는 정부의 공공정책 수행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사법부의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며, 국회의 입법권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폐기해야 함.
- 협정문 제11장 2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은 모두 삭제하고, 제11장의 의무를 어느 한 당사국이 위반한 경우에는 제22장 2절의 분쟁해결절차(당사국간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도록 해야 함.

### 2) 배경 및 취지

- WTO 제도 하에서는 기업이 국가를 제소하려면 자국정부를 이용하거나 상대국가의 법원을 이용해야만 가능했지만, 한미 FTA의 ISD가 도입되면, 기업이 곧바로 상대 국가를 제소할 수 있고,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법원이 아닌 UN이나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중재재판소 등 제3의 국제중재절차를 이용하게 되고, 재판도 3명의 패널에 의해 비공개 단심으로 진행됨. 또 국내법이 아닌 국외법(통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중재 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이 국내 법원의 판결과 다를 경우, 국내 법원의 판결은 무력화됨.
- ISD는 특별히 기업에게만 유리한 독소조항으로 국가의 사법주권과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음.

### 3) 상세내용

- 본래 중재는 소송과는 달리, 양 당사자 모두 동의해야만 성립하기 때문에 한 국가가 중재 요구를 거부하면 당연히 중재가 성립될 수 없음. 그러나 한미 FTA ISD 조항은 투자자가 중재를 요구하면 국가는 설사 그 중재요구가 한 국가의 공공정책을 위협할지라도 무조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자동 동의조항(제11.16조 제4항)을 적용하고 있음.
- 정부는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리 목적의 조치에 대해서는 ISD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 예외 조항에는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를 제외하고”라는 단서조항(예외의 예외 조항)이 달려있어 국가의 공공목적의 조치라 하더라도 전쟁과 같은 상황이 아니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음. 이를 판단하는 것도 국내법원이 아닌 제3의 국제중재재판소로 규정되어 있어 국내의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굴욕적인 독소조항임.
- 더구나 ISD는 외국기업에게만 그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투자한 주식과 특허, 지적재산권, 외채 및 차관에까지 적용됨. ISD를 폐기하지 않으면, 외국주주가 있는 국내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차관을 이용한 국내 재정운용까지 기업들의

이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됨. 국내, 국외 기업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공공규제나 사회공공 제도가 모두 제소대상이 되어 국가의 공공정책마저 무력화 될 수 있음.

- 또 최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및 품목 지정도 국내시장 진출을 노리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에는 한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여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호주는 20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고, 우리도 한·EU FTA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
- 국가가 국제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권 제약적 내용을 포함할 경우, 국회동의(헌법 제60조 제1항)를 거쳐야 함. 투자자-국가 제소권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4)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팀 02-725-7105

## 11. 서비스 시장의 개방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 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

### 1) 골자

- 서비스시장 개방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해야 함.

### 2) 배경 및 취지

- 서비스 산업은 새로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앞으로 어떠한 서비스 시장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시장 개방은 우리에게 매우 불리함.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포지티브 방식의 시장개방이 유리하며, 추후 개방이 필요하다면 재협상을 통해 개방하는 것이 적절함.

### 3) 상세내용

- 한미 FTA에서는 서비스 시장의 개방 방식을 개방해야 할 분야를 하나하나 제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이렇게 되면, 미래유보 분야 44개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게 되며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도 무조건 개방해야 함.
- 또한 도박 서비스, 성인 산업, 다단계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국내에 들어오게 될 때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함. 따라서 서비스시장 개방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해야 함.

### 4) 소관상임위 : 지식경제위원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팀 02-725-7105

## 12. 역진방지(ratchet) 조항 폐기

### 1) 골자

- 역진방지 조항은 선진국과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으로 폐기해야 함.

### 2) 배경 및 취지

-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역진방지(ratchet) 조항은 한국경제 여건에 맞는 개방과 규제의 자율적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주권까지 침해하는 조항임.

### 3) 상세내용

- 역진방지 조항이 적용되면,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 수준으로 환원이 불가하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 중단이 불가함. 또 전기, 가스, 수도가 민영화된 후에 독점 등으로 가격이 폭등하여 혼란이 발생해도,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되어도, 예전 수준으로 환원이 불가함.
- 역진방지 조항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폐기해야 함.

### 4) 소관상임위 : 국토해양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팀 02-725-7105

### 13.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안전성 확보

#### 1) 골자

-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은 한미FTA 협정문 제17장 정부조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
- 한미FTA 협정문 제17장(정부조달) 유보목록의 급식 프로그램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조달대상으로 본다는 조항을 기재해야 함.

#### 2) 배경 및 취지

- 한미 FTA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친환경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게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무력화 할 수 있음. 만약 미국이 한미 FTA를 근거로 우리의 친환경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미국산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문제제기를 할 경우, 미국 측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3) 상세내용

- 그동안 정부는 학교 급식을 위해 한미 FTA 제17장에 <학교 급식 특례 조항>을 두었고 이 때문에 한미 FTA 하에서도 우리 농산물 급식이 가능하다고 홍보해왔음. 그러나 2011년, 경기도와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 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한미FTA 제17장의 학교급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혀 대책이 필요함.
- 외교통상부는 교육청이 WTO GATT 3.8 가호의 정부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서 인정한 내국민 대우 면제에 따라 한국산 농산물을 우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면, 미국은 한미FTA 제2.2조(내국민 대우)를 위반했다고 주장할 것임.
-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급식 식품비의 부담 주체는 학부모이고(8.3조), 식품 구매의 주체는 학교임. 그리고 2009년 기준 급식비의 62.8%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현행 급식 식품 구입이 GATT 3.8조에서의 "정부기관이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구매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GATT 3.8조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육청(및 지방자치단체)이 급식비를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정부기관에 의한 조달(procurement)이라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GATT 3조 8항은 국내산을 구매하는 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 외교부는 사립학교에 대해 사립학교는 민간인이고, 민간인의 선택은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한미 FTA의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

변했음. 그러나 한미 FTA 상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프로그램(우리 농산물을 사용)의 문제는 시행 주체가 누구인가가 핵심임. 정부조달에 중앙정부만 포함할 것인지, 지자체와 교육청도 포함할 것인지가 문제의 본질이지 급식 프로그램의 대상이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냐는 중요하지 않음. 따라서 외교부는 해명은 문제의 본질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미 FTA가 아닌 GATT 조항에 의해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의 급식에서 우리농산물 사용이 가능하다는 외교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한국 학교 급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임.
- 미국은 미국 농무부가 학교 급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미 FTA에서 미국은 제17장 정부조달에서 농무부의 급식프로그램은 정부조달협정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미국산 농산물만을 미국 학교 급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보장 받으려면 미국처럼 급식 프로그램을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조달로 운영해야 함.
- 현재 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보장받으려면, <부속서 17-1>의 대한민국 양허표 “이 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비용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급식 프로그램을 포함한다.”라는 취지로 변경하여야 함.

4) 소관상임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팀 02-725-7105

## 14. 중소기업 보호 장치 확보

### 1) 골자

- 한미 FTA에서 한국이 확보한 '취약 집단' 관련 포괄적 규제권 유보(부속서 II)에는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답변임. 한국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포괄적 규제권을 확보하지 못했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은 한미 FTA의 투자자 보호 조항과 충돌하여 무력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함.

### 2) 배경 및 취지

- 한미 FTA가 허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은 부속서 17-가 제5절 정부조달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제도'에 국한됨. 한미 FTA 협정문에서 우리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포괄적 규제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3) 상세내용

- 한미 FTA에서 투자자는 설립 단계에서의 내국민 대우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제11.5조). 또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수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제11.6조).
- 또 서비스 업종에서는 내국민 대우뿐만 아니라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제도, 경제적 수요 심사제도,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 서비스 자산을 제한하는 제도, 고용 근로자 수를 제한하는 제도, 특정 형태의 법적 실체만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자체를 채택할 수 없음(제12.4조).
- 그러나 2011. 7.에 국회에 발의된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고, 대기업이 이 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장할 때 2개월 전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은 서비스업, 제조업을 불문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투자자가 단지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진입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 이를 정당화할 국제관습법이 없고, 불공정하다는 이유를 들어 투자자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할 것임.
- 더욱이 기존 투자자가 해당 업종에서 퇴출될 경우,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의 침해 행위"로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기대"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며, 투자자가 감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이고, 정책 목적에 비추어 매우 불균형적인 조치인 간접 수용(부속서 11-나)으로 볼 것임.

- 한미 FTA는 명시적인 법령 외에도 관행에도 적용되며,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도 적용됨(2. 1.4조).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은 서비스 업종에서 경제적 수요 심사, 서비스 공급자 수의 제한, 고용 근로자 수의 제한 등에 해당하여 아무리 내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한미 FTA 위반이라고 할 것임.

4) 소관상임위 : 지식경제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팀 02-725-7105

## 15. 중소기업 보호 장치 확보

### 1) 골자

- 한미 FTA 현재·미래 유보에 중소기업 보호의무와 관련한 법안 내용을 기재해야 함.

### 2) 배경 및 취지

-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조치 - 유통법(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상생법(사업조정제도) - 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에 이를 보장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음.
- 현재 미국의 다국적 유통기업인 코스트코는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1994년 서울 양평동에 프라이스클럽으로 첫 개점 후, 전국에 7개점 운영)을 운영하고 있고, 이마트 역시 '트레이더스'라는 비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음. 대형유통기업의 도매업 진출에 대한 규제를 할 경우 한미 FTA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함.

### 3) 상세내용

- 상생법의 사업조정제도, 유통법의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은 한미 FTA의 서비스 분야에서 금지하는,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한 경제적 수요 심사를 통한 서비스 공급자 수의 제한에 해당함(제12.4조 시장접근 보장의무).
- 한미 FTA의 현행 규제목록에서는 도소매유통서비스(p.466, p.469)에서의 시장접근 분야의 무에 대한 불합치 목록에서 유통법, 상생법의 제도를 명기하지 않았음. 또한 미래규제권 목록에서도 현행규제목록에 기술한 것만을 미래에도 추가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음. 따라서 현행 유통법과 상생법의 제도는 한미 FTA에서 현행규제와 미래규제권의 적용을 받지 못함. 특히 상생법의 사업조정제도는 부속서 12-다 다음의 2007. 6. 30.자 서한 (7)항의 도시계획(zoning, p.236)과 토지이용(land use)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기도 어려움.
- 한미FTA 현재유보목록(부속서 I)에는 대형마트와 같은 도소매 유통서비스 시장 접근 의무에 대한 현행 규제로서 영업일수나 영업시간 제한이 게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대형 마트의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는 한미 FTA의 시장접근 의무 조항에 위반됨.
- 한미FTA 미래유보목록(부속서 II)에 따르면, 시장 접근 분야의 미래규제권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 현행보다 더 불리한 대우를 시장 접근분야에서 취할 수 없음. 따라서 한국이 장차 대형 마트에 대한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면 이는 한미 FTA 위반이 됨. 한미 FTA의 현재·미래 유보에 중소기업 보호의무와 관련한 법안 내용을 기재해야 함.

5) 소관상임위 : 지식경제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팀 02-725-7105

## 16. 개성공단 제품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조항 도입

### 1) 골자

- 한미 FTA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조항을 도입해야 함.

### 2) 배경 및 취지

- 정부는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역외가공지역 생산제품에 관한 원산지 인정문제에 대해 한미 FTA 협정 발표 후 양국 간 논의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도입했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가 협정원문에 포함된 것이 중대한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안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기는 불가능할 것임. 이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조항을 도입해야 함.

### 3) 상세내용

-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대해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음. 또 '한반도역외가공 지역위원회'에서 일정 기준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를 채택하고, 위원회는 협정발효 1년 후 구성회의를 개최하기로 정했음.
- 그러나 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 기준 충족 등의 부속조건 달성 하에서만 구성이 가능해 현실성이 없음.
- 이 부속조건에 대한 구체적 합의와 기준사항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북핵문제 등 북미문제의 주도권은 미국과 북한에 있으므로 이 문제는 한국 정부의 관할권 밖에 놓이게 됨.
- 미국 측은 우리 헌법 및 국적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협정 상 혜택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측 "국민"의 정의에 대한 각주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음. 이에 한국 정부는 '국민' 정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헌법을 적용하지 않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했음.
- 우리 국적법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간주됨. 따라서 이 각주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헌법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위헌 소지가 큼.

-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헌법 제2조의 국민 관련 규정을 원용했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들 가운데, 한국을 제외하고 모로코, 바레인, 싱가포르, 올해 1월에 가조인한 파나마까지 협정문에서 국민 규정과 관련하여 자국 헌법 및 국적법을 원용하지 않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음.
- 미국이 이러한 각주를 첨가하도록 요청한 것은 이후 북한에 대한 시장접근 등 다양한 권리 요구에 있어 남한과의 차별방지 및 동등한 권리 요구를 위한 장기적 포석으로 간주됨. 다시 말하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북한을 남한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별도의 국가 내지 정치체제로 규정하여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 등에 우리 헌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임.
- 미국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에 대해 노동, 환경기준 충족 등을 조건화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 미국은 한미 FTA 서명본에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노동기준인 단결권, 단체교섭권의 보장 조항을 넣었음. 이는 한국의 노동자 권리가 ILO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산 제품이 값싸게 생산되고, 미국에 많이 팔리고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노동 기준과 합법적인 무역 보복을 연계한 것이라 하겠음.
-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은 자신의 노동기준을 이유로 미국이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국제법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해왔음. 그 결과 1994년의 WTO 협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새로운 WTO 협상이라고 하는 도하 협상(DDA)에서도 노동 기준과 무역의 연계는 의제에 오르지 못했음. 그러나 미국은 마침내 2007년 6월 30일, 한미 FTA에서 이를 성공했음. 세계의 15대 무역국 안에 들어 있는 나라 가운데, 오직 한국만 미국으로부터 노동 기준과 무역 보복의 연계를 당하게 되었음.
- 정부는 한국과 미국의 공무원들이 이른바 '역외가공지역(OPZ) 위원회'에서 잘 의논하면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을 받으면 바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미국에 수출될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음.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미국 의회는 개성공단산의 한국산 인정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 4) 소관상임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팀 02-725-7105

## 17.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자료 철저히 검증

### 1) 골자

- 2011년 8월 5일, 정부가 제출한 한미 FTA 경제 효과 재분석 자료를 철저히 검증해야 함.

### 2) 배경 및 취지

- 정부는 2011년 8월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의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학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GDP 증가율, 고용창출효과, 수출입 및 무역수지 등이 증가하거나 확대된다는 정부 측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악화된다는 결과가 나왔음.
- 더구나,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의뢰받은 '기발효 FTA와 한미FTA 발효 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도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국민일보, 2010년 9월 13일 보도)한 만큼, 같은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결과가 서로 다른 이유를 철저히 따져보아야 함.

### 3) 상세내용

- 정부의 생산성 증대 고려 모형(CGEM)은 유일하게 한국 정부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모형으로 잘못된 모형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모형임. 한편, 미국은 한미 FTA 경제효과를 추계함에 있어 GTAP의 표준모형과 유사한 모형을 활용하고 있음.
- 한미 FTA 경제효과와 관련된 국제통상연구소(TDI)의 연구를 종합하면, 한EU 및 한미 FTA 실질 GDP 증가율은 제로"0"%대에 불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FTA 체결로 인한 GDP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미국 USITC 등이 사용하는 표준 방법론을 사용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미 FTA가 도입되면 한국 측의 무역수지흑자는 대폭감소하고, 결국 대미 무역적자국 전환을 예측하고 있음. 또 GDP증가와 연동하여 도출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매우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음.
- 한미 FTA로 인한 미국 시장의 선점효과가 클 것이라는 예측 또한 매우 과장된 것으로, 선점효과가 있더라도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선점 당하는 효과가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투자증대 효과 역시 양질의 직접투자보다는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 제기되었음.
- 한미 FTA는 수출의존도를 더 심화시키고, 금융시장 개방을 더욱 가속화시켜 한국경제가 지금보다 더 대외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게 될 것임. 이에 한미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부의 재분석 자료를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야 함.

- 4) 소관상임위 : 국토해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부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팀 02-725-7105

## 18. 위키리크스에서 드러난 한미 FTA 협상과정에 대한 진실 규명

### 1) 골자

- 국회는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 통상협상책임자와 고위 공무원들이 협상 상대국인 미국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또 이 정보가 FTA 협상 과정과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함.

### 2) 배경 및 취지

- 최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한미 FTA 협상 관련 비밀문건에 의하면, 한국의 한미 FTA 협상 대표인 정부 관료가 미국정부에 FTA 관련 청와대 회의내용을 알리고, 미국에게 이로운 사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미국이 한국의 정책결정 내용을 무시하는 것을 양해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음. 통상협상 책임자와 고위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해함.

### 3) 세부내용

- 한국이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2006년 2월 직후에 열린 2006년 3월의 정례 통상 협의회(QTM)에서 이미 한국과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스크린 쿼터, 자동차 등이 FTA 개시 선언을 끌어 낸 핵심 쟁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06SEOUL864). 그런데도 당시 한국 정부는 이러한 4대 선결 조건 자체를 부인하다가 2006년 7월에서야 공식 인정하였음.
- 2006년 6월 13일자 주한미대사관 보고전문(06SEOUL1963)에 따르면, 권오규 당시 청와대 정책 수석은 2006년 6월 7일부터 9일 사이에 버시바우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FTA 지원의 네 가지 과제와 관련 정부 내 조직에 대하여 브리핑을 제공하였음.
- 주한미대사 버시바우의 2006년 7월 25일자 보고전문(06SEOUL2505)에 따르면,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인 김현중은 2006년 7월 24일 오후 버시바우 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2010년 7월 21일 청와대 회의에서 의약품 가격 적정화 방안 입법예고 절차가 토론되었고, 이 회의의 초점이 한국의 4대 선결 조건 동의에 대한 비판 여론에 초점을 두었다고 전했음.
- 주한미대사가 2006년 7월 25일자로 국무장관 등에 보고한 전문(06SEOUL2505)에 의하면, 한국의 당시 FTA 협상대표였던 김현중은 미 대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한국정부의 약가적정화방안 발표에 대해 미국 정부에 미리 알리고, 미국이 의미 있게 의견을 제출할 시간을 주었으며, FTA 의약품 작업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 미국 측에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항들을 관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fighting like hell”)고 전함.
- 2008년 촛불항쟁을 불러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월 16일 대통령 당선인 사무실에서 이노우에 미 상원의원, 테드 스티븐스 상원의원, 알렉산더 버

시바우 주한미국 대사 등을 만나 '쇠고기 문제가 FTA 비준 등 한미 간 제반 현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쇠고기 시장 개방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음(08SEOUL102). 또 "기자들이 없으니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좋고 싸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말하고, "쌀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쇠고기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에게 커다란 잠재적인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함(08SEOUL102).

-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2008년 1월 17일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를 만나 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될 것이라면서, "이 당선인이 쇠고기 이슈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알고 있으며, 그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시장에 개방될 것"을 장담했다고 함(08SEOUL112).
- 주한미대사가 2008년 3월 25일자로 미 국무부장관에게 보고한 2급 비밀문서(08SEOUL592)에 의하면, 이 대통령이 방미순방을 통해 미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4월 16일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에 OIE 기준에 따라 쇠고기 시장 전면 재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함. 미 대사는 한국의 무역팀이 이 대통령 방미까지 미국 측 요구에 맞춰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보고함.
- 국회는 이상의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한미 FTA 협상 관련 비밀문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통상협상 책임자와 고위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함.

#### 4) 소관상임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팀 02-725-7105

# 제주해군기지의 해양전략상 논란과 문제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11. 9.

## 1. 해군 측 주장

-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가 △남방 해양수송로 안전 보장, △해양자원 확보, △ 중일 해양 갈등 시 신속한 전개를 위한 해군력 전진배치, △북한의 해상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2. 해군 논리의 비현실성과 문제점

### ○남방해양수송로 보호론의 비현실성과 문제점

- 남방 해양수송로 안전 보장 임무는 이미 정부간 외교협력(ex, ReCAAP, The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한국은 국토해양부 참여) 혹은 해안경비대 간(ex, HACGA, Heads of Asian Coast Guard Agencies Meeting, 한국 해경 참여) 협력과제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짐.
- 일반적으로 민간상선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나 민간상선을 군함으로 호위하는 것 모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발상임.
- 유독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이러한 논리-해양안보를 위한 해양통제(sea control)-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 미국의 해양군사패권 전략을 포장하는 논리라고 비판받은 바 있음.
- 실제로 미국이 말라카 해협 등을 대상으로 지역해양안보구상(RMSI)을 제안했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중국 등이 미국 군함 주도의 해양통제가 도리어 말라카 해협을 군사화하고, 각국 영해에서의 해양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음

- 동북아 해역에서 해적/해상테러는 통항안전과 관련된 주된 쟁점이라 할 수 없음. 말라카 해협에서는 해적 사건에 한해서만 극히 적은 빈도로 일어나고 있었고 이마저도 각국이 해경 간 협력을 강화한 최근 거의 사라졌음. 해군 등의 주장과 달리, 말라카 해협 인근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어로행위임.

### ○ 중/일과의 해양 갈등 대비론의 비현실성과 문제점

- 해군력이 강력한 중국과 일본에 대항하여 해양자원과 EEZ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역시 해군력 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의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음.
- 한국은 일본의 해양위협에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고 도리어 적극 협력하는 관계임. 이미 한국 해군은 일본과 더불어 미국 주도의 해군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고 있고, RIMPAC 등 주된 해양군사훈련도 함께 진행하고 있음.
- 미국은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미일호주 삼각군사협력, 미일인도 삼각군사협력을 아시아 군사협력의 축으로 이해하고 있음. 미국은 일본이 인도양 태평양을 망라한 해양협력의 전략적 파트너임을 숨기지 않고 있음.
- 해양갈등 대비론의 본질은 사실상 한국 해군이 한미일의 해군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해상활동을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자주국방의 측면보다는 도리어 미중패권경쟁에서 미국 측에 배타적으로 편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우 위험한 주장임.
- 미국에 군사적으로 편승하여 G2로 성장하는 중국에 대항하겠다는 것은 중국 등 주변국과의 해양갈등을 부추길지언정 해양갈등을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라 할 수 없음.

### ○ 대양해군 = 자주국방 등식의 비현실성과 문제점

- 미군사력 감축에 대비해 자주국방 차원에서 해군력을 강화하고 제주해군기지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실제로 미국은 세계금융위기와 재정적자,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 등 복합적인 내외부 요

인으로 인해 군사력-특히 주력인 해군력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왔음.

- 그러나 부시행정부에 이어 오마바 행정부는 지구촌 전역의 대양과 연안에서의 해상패권을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도리어 동맹국 해군의 지역적 지구적 역할을 독려함으로써 이른바 '1000척(국제)해군(1000-Ship Navy concept = Global Maritime Partnership)'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추구하고 있음.
- 이 구상은 한마디로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이 동맹국 해군의 힘을 빌어 세계 모든 전략적 해역(ex, 서태평양=중국/한반도 연안)에 대해 미 해군력의 전진배치를 유지/보장하고, 해양타격(Sea Strike), 해양방어(Sea Shield), 해양기지화(Sea Basing) 등을 망라하는 압도적인 제해권(Sea Control)를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전략임.
- △해양타격은 적대국에 대한 정보수집능력, 선제핵공격까지 포함하는 중심타격 능력, 상륙 및 대량살상무기 접수해체 능력, 통합적 지휘통제능력 등을 의미하고, △해양방어는 미사일 방어능력을 그 핵심으로 하며, △해양기지화란 고정된 해공군 기지를 두지 않고도,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핵잠수함을 핵심전력으로 하는 일정 규모의 기동전단(Task Force)을 세계 각지에 파견한다는 의미임.
- 최근 미군이 해외 미해군기지를 더 건설하지 않고 동맹국에 더 많은 기항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전략을 배경으로 하는 것임.
- 제주해군기지에 미 해군의 기항만 보장된다면, 미해군은 해양기지화, 해양방어 개념에 따라 제주도 서남방 해양에서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그리고 이지스함을 동원하여 중국/북한을 바다로부터 (From the sea) 봉쇄하고, MD 시스템도 운용할 수 있음.
- 실제로 한국은 이 구상에 적극 동참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미국 주도의 연합해군참여(Combined Maritime Force, 청해부대가 그 사례), △한미일 미사일방어(MD)체제 상호운용성(inter-operable ability)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한미일 이지스함정간의 공동훈련(RIMPAC 훈련의 일부)을 수행해 오고 있음.

## ○ 갈등해역 신속전개론의 비현실성과 문제점

- 해군력의 전진배치의 필요성은 명백히 과장된 것임. 한국이 소유한 이지스함의 탐지거리나 이지스함 탑재 유도무기는 수백Km를 사정거리로 두고 있음.
- 더구나 항공모함을 보유한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해군 역시 대형수송함 등 보급용 선박을 보유하고 있어 원거리 항해가 가능함(이른바 Sea basing 기능이 가능).
- 게다가 앞에서도 서술했듯이 영토분쟁이나 해양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군사적 대결로 치닫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설사 만에 하나 영토분쟁이나 해양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군사적 대결로 치닫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성격상 정부간 외교갈등과 해경간의 갈등이 충분히 고조된 이후에 일어나게 마련이므로 기지의 전진배치가 군사적 우위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도리어 중국 본토에 인접한 제주도에 미군도 이용할 수 있는 한국군의 전략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중국의 탄도미사일 혹은 유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제주도 전체를 공군부대, 특수부대, 병참부대로 요새화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만 지게될 것임.

## ○ 북한위협 대비론의 비현실성과 문제점

- 동서해의 북한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동서이동이 용이한 제주도에 기동전단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전진배치론'의 공색한 변종으로서 고려의 가치가 없음.
- 제주도 해군기지에 주둔하게 될 이지스함이 중단거리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방어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
-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 발전된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작계 5029 혹은 5015)은 북한 급변사태 시 미태평양사령부의 지원전력과 한국군 등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상륙/투입되

어 한국군은 북한 안정화를 도모하고, 미군은 대량살상무기 시설에 대한 접수/해체를 담당한다는 공격적 군사계획으로서, 키리졸브/독수리연습(Key Resolve/Foal Eagle), 을지그리드(Ulchi Guardian Freedom,UGF)), 코브라 골드 훈련(Cobra Gold, 매년 태국에서 개최, 한국과 미국은 태국군과 더불어 세계최대 규모의 상륙훈련을 수행)등이 이 계획에 따른 연합훈련임.

- 이 작전계획과 군사훈련들은 미해군의 바다로부터의 전략 즉 해상타격과 해상기지화 개념의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구현 사례로서,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미태평양사령부의 핵심전력이 대부분 참여(유사시 태평양 사령부 전력의 2/3이 집중될 것을 예정)하는 세계 최대의 군사훈련임.
- 그런데 북한비상사태대비계획은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화되기 힘든 공격적인 요소(점령)를 포함하고 있음. 이 계획이 방어적으로 수정되지 않으면 이 계획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남북간 군사갈등은 물론 지속되는 역내 군사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실제로 중국은 최근, 특히 2010년 이후 서해와 동해에 기항한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음.

<보론>

○ 미중패권 갈등과 관성적 한미동맹의 위협성

- 전문가들(이남주, 김기정, 이삼성, 이희욱 등)은 1) 중국의 성장과 미국 패권의 약화가 뚜렷해지고 G2라는 용어도 종종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 2) 미중이 당분간 극단적인 갈등은 서로 피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협력요인보다는 전략적 이해갈등요인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고,
- 3) 미국이 중국의 앞바다인 서태평양 지역에서 과거의 배타적 해양패권을 유지하려 할 경우 이러한 갈등은 심화될 수 있으며,
- 4) 중국은 지구적인 차원에서는 미국의 패권을 용인할 지라도, 동북아 해양에서만큼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키는데 한정된 힘을 집중하려 할 것이므로,

- 5) 전통적으로 미국에 편승해온 남한이 미중갈등으로 인해 겪을 외교전략상의 위기는 우리의 관성적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 6) 특히 한국의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해서도 최근 강화되는 동북아 대분단체제(신냉전체제)의 어느 한쪽에 편승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음.

○ 제주해군기지에는 핵항공모함이 기항할 수 없나?

- 제주해군기지에는 대형함정 20여톤이 일시에 정박할 수 있는 대규모 군항을 건설하면서 동시에 15만톤 규모 크루즈 함정 2척이 동시에 기항할 수 있음.
- 항공모함은 대형 10만톤, 중형5만톤급 함정으로 크루즈 선박보다 작으므로 제주해군기지에 정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 한편, 민간 크루즈 사업은 이웃한 화순항과 서귀포항의 유사사업으로 인해 사업적 타당성을 갖기 어려움.
- 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갖기 힘든 크루즈 항만시설은 도리어 핵항공모함과 같은 초대형 미군 함정이 전용하여 기항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동기를 제공할 우려가 큼.

## 한미FTA와 독소/불평등 조항<sup>1</sup>

한미FTA협정문	해당 조항	해결방안
서문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삭제
제2.12조 배기량기준세제	3. 대한민국은 차종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배기량 기준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	삭제
부속서 3-가 농업 긴급수입 제한조치		재협상
제10장 무역구제		재협상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나. 적절한 규제당국이 안전하고 유효한 것으로 승인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급여액을 그 당사국이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이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에 기초하도록 보장한다....	'시장도출가격', '가치'등 용어 명료화 아니면 삭제
제5.2조 혁신에의 접근(100)	1) 특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치를 자국이 제공하는 급여액에 있어 적절히 인정한다.	
제11장 제2절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전면재협상
제11장 제3절 정의	라. 선물, 옵션과 그 밖의 파생상품	삭제
투자	...	
제11장 제3절 정의	투자계약이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가 당국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자의 투자자간 서면계약으로서 적용대상투자 또는 투자자가 서면계약 그 자체 이외의 적용대상투자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데 의존하고, 적용대상투자 또는 투자자에게 다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삭제, 최소한 '투자계약'에 대한 ISD 적용 배제
투자계약	...	
	나. 발전 또는 배전, 용수 처리 또는 분배, 또는 통신과 같이 당사국을 대신하여 공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다. 정부의 배타적 또는 현저한 이용과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닌, 도로, 교량, 운하, 댐 또는 배관의 건설과 같은, 기반 시설사업을 수행할 권리	
부속서 11-나 수용	3. 제11.6조 제1항에 다루어진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목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간접수용 인정은 '위험적' 독소조항, 삭제
3. 간접수용	....	
	나. 예컨대,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가격안정화 (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1 국제통상연구소 자료집(한미FTA와 독소/불평등조항 이해영, 이종훈 2011.07.28) 인용. 이 내용은 관세부문에 서 농업부문의 관세양허표상의 문제와 FTA 협정문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는 GMO,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등의 문제는 제외한 것임.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1-바 과세 및 수용과 제23.3조 과세의 제6항 가호	가. 조세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한 도입이나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관할권에서 과세조치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23.3조 제6항 가호 가. 제11.16조(중재의 청구제기)는 수용 또는 투자계약이나 투자승인의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과세가 ISD(제11.16조)대상이 되지 여부를 명료화해야 함
제11.12조 비합치조치	1. 제11.3조, 제11.4조, 제11.8조 및 제11.9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조치의 개정. 다만 그 개정은 제11.3조, 제11.4조, 제11.8조 및 제11.9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삭제 내지 개정
부속서 11-사 송금	가.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효할 것. 다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대한민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대한민국은 사전에 어떠한 연장안의 이행에 관하여도 미합중국과 조율한다. ... 라. 모든 제한된 자산에 관하여 대한민국 영역에서 시장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아니할 것 마. 미합중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 2. 제1항은 다음을 제한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그러한 조치의 부과가 국제통화기금협정 조항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고 2) 대한민국이 그러한 조치를 미합중국과 사전 조율하는 경우, 또는 나. 외국인 직접투자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	재협상, 금융 세이프가드의 실질 확보
제12.6조 비합치조치	1. 다.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조치의 개정. 다만, 그 개정은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또는 제12.5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삭제 내지 개정
제13.20조 정의	차. 거래소 및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산 또는 고객계산으로 거래하는 것	대폭 개정, 최소 파생상품 삭제
금융서비스	... 3)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4)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제13.6조 신금융서비스	카.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매출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당사국이 금융기관에게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인가를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개정 (예컨대 "...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 등으로 거절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을 삽입해야 함.
부속서 13-나 구체적 약속 제2절 정보의 이전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그 기관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하여 자국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후 2년 이내에 이 약속을 발효한다.	재협상
제18.9조 특정	가. 제품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른바 "허가-특허 연계" 조항,

규제제품과 관련된 조치 제5항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존속기간 동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시판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다른 인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나.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없이 다른 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판승인 절차에서의 조치를 이행한다.	** 2010년 12월 재협상에서는 3년 유예한 것은 오직 제5항 전체가 아니라 절반인 나항에 불과함
허가특허연계조항 관련된부속서한	미합중국 또는 대한민국 중 어떠한 당사국도 협정 제18.9조 제5항 나항에 따른 다른 쪽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 협정 발효일이 후 처음 18월 동안 협정 제22.4조를 발동하지 아니할 것이다.	2010년 12월 재협상에서 18월 3년으로 늘어남. 제18.9조 제5항 삭제와 연계해서 삭제해야함
분쟁해결절차 제22.4조 적용범위	다. 이협정에불합치하지아니하는조치의결과로서제2장(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 및시장접근),제3장(농업),제4장(섬유및의류),제6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제12장(국경간서비스무역),제17장(정부조달),또는제18장(지적재산권)상자국에발생할것으로합리적으로기대할수있었던혜택이무효화되거나침해되고있다.	“합리적 기대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 규정을 명료화할 필요 있음
부속서한	양당사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 온라인 저작권 무단복제를 행하는 새로운 기술적인 수단의 영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목적, 그리고 인터넷사이트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목적에 동의한다.	삭제
부속서 22-가	5. 최종 보고서에서 패널이 다음을 판정하는 경우, 제소당사국은 관세 세번 8703호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그러한 상품에 대한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	일방의무조항.으로서 불평등, 독소조항, 삭제
자동차에 대한 대체적 분쟁절차	가. 피소 당사국이 이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피소 당사국의 조치가 제22.4조 다항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나.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제소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의,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부속서 22-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3.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들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으로부터의 상품이 이 협정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을 수립한다. 그 기준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전 - 역외가공지역들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 그 역외가공지역에서 일반적인 환경 기준, 노동 기준 및 관행, 임금 관행과 영업 및 경영 관행. 이 경우 현지 경제의 그 밖의 곳에서 일반적인 상황 및 관련 국제규범을 적절하게 참고한다. 5. 위원회의 일치된 동의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양 당사국에게 권고되며 양 당사국은 역외가공지역들에 대하여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입법적 승인을 구할 책임을 진다.	개성공단을 명시하고, 단서조항들을 전면 개정해야 함
부속서I	대한민국내영화상영관영자는각상영관에서연간73일이상한국영화를상영하여야한다.	삭제 또는 부속서II(미래유보)로
부속서II	1. 대한민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2007) 제4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2007) 제5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채택한 후 즉시 미 합중국에 서면통지를 하고, 그러한 조치는 다음의 경우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공공질서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환경, 안전등을 추가하고, 나항을 구체화해야
대한민국의	가. 외국인투자촉진법(2007),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2007) 및 그	

유보목록 투자	밖의 적용법률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나.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되거나 유지된다.	
	다. ...	
	라. ...	
부속서II	2	삭제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투자	...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 조치가 제1항 가호 내지 마호까지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없다.	
부속서I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분야 모든 분야	한국은 항공, 어업, 해운, 위성방송, 철도, 시청각공동제작, 미국은 항공, 어업, 해운, 위성분야를 제외하고 향후 체결한 FTA에서 한미 FTA보다 더욱 개방된 조건 있을 경우 미국에 자동 적용되도록 개정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관련의무 최혜국대우 (제11.4조 및 제12.3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표일 이후 발효되거나 체결되는 다음의 분야에 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당해협정 당사국에 대하여 차등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또는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부속서II	분야 :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자유구역, 제주도에 대한 영리병원 허용조항, 삭제
	관련의무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의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현지주재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기관, 약국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에 관련된 특례와 그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관련 특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